

의안번호	제 610 호
의 결 연 월 일	2017년 월 일 (제 356 회)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17년 5월 31일

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칩

#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610
----------	-----

제출연월일 : 2017년 5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조항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의 전출시기 근거 조항 설치로 조례조항 조정(안 제15조)
  - 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3. 의안전문 :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 6.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세액 중 100분의 90 이상을 2개월 마다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 재정상 긴급하거나 특별한 재정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전출규모를 조정할 수 있다.</p>	<p>제15조(교부금의 전출시기) 도지사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되, 의무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의무교육외의 교육에 관련되는 경비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재원중 교부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수업료 및 입학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다음의 금액을 각각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방세법」 제151조에 따른 지방교육세에 해당하는 금액
2. 담배소비세의 100분의 45에 해당하는 금액(도를 제외한다)
3. 서울특별시는 특별시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목적세 및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광역시 및 경기도는 광역시세 또는 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목적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그 밖의 도 및 특별자치도는 도세 또는 특별자치도세 총액의 1천분의 36에 해당하는 금액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내역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시·도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세목의 월별 징수액 중 제2항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다음 달 말일까지

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되, 전출하여야 하는 금액과 전출한 금액의 차액을 분기별로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⑤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⑥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충당되는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때에는 미리 해당 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시·도교육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된 세출예산을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교육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시·도는 관할지역 내의 교육·학예의 진흥을 위하여 제2항 각 호 외에 별도의 경비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⑩시·도지사는 제2항부터 제5항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별·월별 전출 결과를 매년 2월 28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